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(제 18388호, 21.8.10일 공포, 21.11.11일 시행)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.

이에,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21조의2)

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심사 예정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 119조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추진위원회, 사업시행자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,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, 사업시행계획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
2. 영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
3.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
4. 법 제12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서

② 관계 행정기관의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추진위원회, 사업시행자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2.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
3.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2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 및 영 제96조제2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, 시·도 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추진위원회, 사업시행자,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 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1.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 역의 지정,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, 사업시행 계획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</u> <u>2. 영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</u> <u>3.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</u> <u>4. 법 제12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서</u> <u>② 관계 행정기관의장, 시·도 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추진위원회, 사업시행자, 정비</u>

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2.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
3.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84